

#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별교실

## 2022년 제 2차 운영위원회 공유 자료

### 1. 개회 및 인사말씀

### 2. 전차회의록 보고

- 직원관련 보고 (승진, 장기근속, 직원교육 )
- 사업진행보고
- 예산 사용 보고
- 기타 보고 사항

### 3. 2022년 2분기 사업 진행사항 및 3분기 계획보고

#### ● 복지관

##### - 직원관련 보고

: 복직, 퇴사, 장기근속, 외부시상

##### - 복지관 사업진행 및 계획보고

: 직원전문성강화사업, 복지관 전면개방, 풀꽃향기, 홍보출판사업, 똑똑, 동네사람들, 이웃기웃, 사례관리, 행복가족레시피, 지역밀착형사회복지관사업, 동네안녕, 친구야 놀자, 단기사회사업, 28주년 개관기념식

##### - 기타사업보고

: 지속가능 친환경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관 지원사업

#### ● 햇별교실

##### - 2분기 진행사항 보고

: 장애인의날 맞이 후원처 인사, 어버이날 맞이 감사의 마음 전달, 2022 복지시설 문화예술 지원사업 선정, 직원전문성사업, 일상&가족지원사업, 네트워크사업, 여가지원사업, 심리지원사업

##### - 3분기 예정사업 보고

: 소식지 발간, 여행, 2022년 복지시설이용자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팀연수, 강강술래

### 4. 예산보고

- 2022년 1월 ~ 6월 복지관 및 햇별교실 결산보고

[2022년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예산보고]

2022. 1. 1 ~ 2022. 6. 15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사업수입	사업수입	78,144,000	33,061,390	42.31	사무비	인건비	966,848,310	397,123,500	41.07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1,350,478,980	745,550,180	55.21	사무비	업무추진비	5,600,000	1,511,250	26.99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85,500,000	54,140,532	63.32	사무비	운영비	123,135,000	39,719,766	32.26
전입금	전입금	50,000,000	11,200,000	22.4	재산조성비	시설비	29,960,000	5,229,860	17.46
이월금	이월금	74,399,110	87,018,607	116.96	사업비	사업비	538,596,254	190,820,178	35.43
잡수입	잡수입	46,360,000	18,566,130	40.05	잡지출	잡지출	1,000,000	0	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19,742,526	2,601,788	13.18
세입 합계		1,684,882,090	949,536,839	56.36	세출 합계		1,684,882,090	637,006,342	37.81

[2022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햇별교실 예산보고]

2022. 1. 1 ~ 2022. 6. 15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집행율(%)
사업수입	사업수입	32,160,000	12,240,000	38.06	사무비	인건비	195,838,810	75,167,880	38.38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206,618,810	99,626,640	48.22	사무비	업무추진비	650,000	0	0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2,640,000	920,000	34.85	사무비	운영비	18,634,000	7,392,419	39.67
전입금	전입금	3,000,000	0	0	재산조성비	시설비	3,800,000	3,340,000	87.89
이월금	이월금	13,750,000	14,428,960	104.94	사업비	사업비	37,220,000	10,210,918	27.43
잡수입	잡수입	180,000	10,405,027	-	잡지출	잡지출	150,000	0	0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2,056,000	0	0
세입 합계		258,348,810	137,620,627	53.27	세출 합계		258,348,810	96,111,217	37.20

5. 복무시행세칙 변경

- 출퇴근 및 결근 : 기관에서 지정하는 업무의 추가근무는 수당 및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음.
- 휴일 대체 : 주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주 1:1 업무대체를 우선 적용함. 부득이 근무가 필요할 경우 주휴일의 근무는 최대 4시간까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함.

6. 회의 사진

